

의안번호	제792호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충청북도 외국인 유학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	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4년 11월 15일

충청북도 외국인 유학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현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92
----------	-----

발의연월일 : 2024년 11월 15일

발 의 자 : 김현문, 이상식, 박지현, 이동우,
유재목, 김정일, 박재주

1. 제안이유

- 충청북도는 학령인구 및 생산가능인구 급감 등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여 학업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충북형 K-유학생 프로젝트를 추진 중임
- 이에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안정적인 유학생생활 지원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역사회 활동 참여 확대 등 충북형 K-유학생 제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외국인 유학생 관련 도지사의 책무와 조례의 지원 대상을 규정함 (안 제3조 및 안 제4조)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지원계획 수립, 지원 사업, 유치 확대 등에 관해 규정함(안 제5조 ~ 안 제7조)
-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무 위탁 및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함(안 제8조 및 안 제9조)

3. 조례안 전문 : 붙임

4. 참고사항

- 관 계 법 령 : 붙임
- 비 용 추 계 : 붙임
- 협 의 : 충청북도 외국인정책추진단
- 조례안 예고 : 예고 대상(충청북도의회 홈페이지 게시 예정)

충청북도 외국인 유학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안정적인 국내 유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와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통하여 지역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유학생”이란 국내 체류자격을 가지고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서 도내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학하거나 연구하는 학생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의 외국인 또는 같은 항 제7호나목의 외국인

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가목의 재외국민

2. “어학연수생”이란 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으로서 도내 대학 및 대학원에 수학하기 위해 도내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이하 “외국인 유학생등”이라 한다)이 지역사회 적응 및 참여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는 외국인 유학생등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매년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 유학생등 지원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 유학생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3. 외국인 유학생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외국인 유학생등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5. 외국인 유학생등의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외국인 유학생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성별, 나이, 국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평가하고 다음해 지원계획에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외국인 유학생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국어 교육 및 초기 생활 적응 교육
2.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지원

3. 생활·법률 상담
4. 취업·창업 연계 및 상담
5.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사회 적응 및 활동 참여
6. 지역 정체성 강화를 위한 역사·문화 교육 및 행사
7. 외국인 유학생등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8. 안전, 인권 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9. 그 밖에 도지사가 외국인 유학생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및 대학,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받은 자 또는 수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업경비를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사업경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유치 확대) 도지사는 해외의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등의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

1. 도 유학 상품 개발·홍보 및 설명회 개최
2. 유학생 컨설팅 및 박람회 해외 현지 개최
3. 그 밖에 도지사가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업무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그 업무를 전문성 있는 관계 기관, 법인·단체,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수탁자의 사업수행에 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외국인 유학생등의 지원과 유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내 대학, 기업체, 외국인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①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외국인정책의 추진과제, 그 추진방법 및 추진시기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외국인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위임한 사무에 관하여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사항을 기본계획 및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다음 해 시행계획과 지난 해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문화에 대한 교육,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의료 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②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준용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와 제2항의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31.>

제13조(영주권자의 처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이하 “영주권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그 밖에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한민국으로의 입국·체류 또는 대한민국 안에서의 경제활동 등을 보장할 수 있다.

② 제12조제1항은 영주권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8조(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역사·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입학·편입학 등)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호·제3호·제8호·제9호·제11호·제12호·제13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총학생수는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00. 11. 28., 2001. 1. 29., 2001. 12. 31., 2002. 5. 27., 2005. 3. 25., 2006. 1. 13., 2007. 1. 24., 2008. 2. 14., 2008. 6. 5., 2008. 9. 18., 2009. 10. 7., 2010. 6. 29., 2010. 9. 1., 2011. 10. 17., 2013. 3. 23., 2014. 2. 11., 2014. 4. 29., 2015. 11. 30., 2016. 8. 29., 2016. 10. 25., 2017. 1. 17., 2018. 10. 16., 2022. 2. 28., 2023. 4. 18., 2024. 2. 20.>

1. ~ 5. (생략)

6.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7.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재외국민

나. 외국인

다.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8. ~ 16. (생략)

③ ~ ⑦ (생략)

□ 출입국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10., 2014. 3. 18., 2018. 3. 20., 2020. 6. 9., 2021. 8. 17.>

1. “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을 말한다.
2.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10조(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1. 일반체류자격: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2. 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전문개정 2018. 3. 20.]

제10조의2(일반체류자격) ① 제10조제1호에 따른 일반체류자격(이하 “일반체류자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단기체류자격: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사증면제협정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
2. 장기체류자격: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② 제1항에 따른 단기체류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체류목적, 취업활동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3. 20.]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②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5. 14.]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5. 14.]

충청북도 외국인 유학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안정적인 국내 유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와 지역사회 활동 참여 지원을 통해 지역 경쟁력 제고

2. 비용 발생 요인

- K-유학생 유치 충북 유학박람회 개최
-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 개최
- 외국인 유학생 홈페이지 구축 및 유지관리
- K-유학생 홍보 및 국외여비

3. 관련조문

- 안 제6조(지원 사업)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 계 기 간 :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으로 함
- 재정수반요인 : 외국인 유학생 등의 국내 유학 지원에 관한 소요예산
※ 2024년 예산액 및 2025년 당초예산 요구액 기준 작성
(기추진 4개 사업)

나. 추 계 결 과 : 1,050백만원(도비 100%)

다. 재원조달방안 : 도 비

- ※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함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계
세 출	341,000	231,000	239,000	239,000	1,050,000
유학박람회	140,000	140,000	140,000	140,000	560,000
취업박람회	20,000	30,000	30,000	30,000	110,000
홈페이지 구축 및 유지관리	120,000	-	8,000	8,000	136,000
홍보비 및 여비	61,000	61,000	61,000	61,000	244,000
재원 조달	341,000	231,000	239,000	239,000	1,050,000
도비	341,000	231,000	239,000	239,000	1,050,000

※ 전체 기 추진 사업임